정보시스템감리기준

제 정 2014.5.22. 개 정(1) 2014.12.31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전산업무관리규정」에서 위임한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감리"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 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감리대상사업자"란 공사의 요청에 따라 감리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- 3. "감리법인"이란 「전자정부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한법인을 말한다.
- 4. "감리보고서"란 감리인이 감리 및 시정조치확인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를 말한다. "감리보고서"에는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점검결과를 명시한 "감리수행결과보고서"와 시정조치사항을 확인한 결과를 명시한 "시정조치확인보고서"가 있다.

제2장 감리대상사업 및 실시시기, 감리인 등

- 제3조(감리대상사업 및 실시시기 등) ①다음 각 호의 사업은 감리인으로부터 감리를 받아야 한다.
 - 1. 정보시스템 구축 총사업비(하드웨어, 소프트웨어 단순구입비용 제외)가 5억원 이상인 사업
 - 2.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, 민원업무처리사업, 다수 공공기관 공동구축사업, 공공기관간 연계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
 - 3. 그 밖에 사장이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화 사업(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외부주문등을 포함한다)
 - ②제1항의 감리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요구정의, 설계, 종료단계별로 감리인으로부터 감리계획서를 제출받고, 계획된 시기에 감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. 다만, 감리대 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요구정의 단

계의 감리는 생략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사가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.

- 제4조(감리인 등) ①감리는 감리법인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<u>IT전략인</u> 전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내 별도의 조직(이하 "감리TF"라 한다)을 구성하여 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 - ②제1항의 감리TF를 구성할 때에는 「전자정부법 시행령」 별표3에서 정하는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<u>IT전략안전부장</u>이 감리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1명이상 포함시켜야 한다. 다만 공사가 직접 감리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, 그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에 속한 자는 감리TF에 포함될 수 없다.
- **제5조(자료요청)** ①감리인은 감리대상사업자에게 감리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서류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감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 야 한다.
- 제6조(감리보고 및 시정조치) ①감리인은 단계별 감리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공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부적절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 - ②제1항과 관련하여 개선의견을 받은 감리대상사업자는 공사 등과 협의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,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완료된 경우그 처리결과를 공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감리인은 제2항의 시정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공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장 보 칙

- 제7조(문서관리) 공사는 감리계약서, 감리계획서, 감리보고서 등 감리업무 관련 중요문 서를 감리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8조(다른 규정의 준용) 정보시스템 감리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전자정부법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 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4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발주하는 감리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.

<u> 부칙 (1)</u>

이 기준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